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10일, 이용우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1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2. 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용우의원)

산업현장에서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하청노동자에게 일어나고 있어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이에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와 선박의 제조 및 수리를 최초로 도급한 수급인에 한해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건설발주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은 원청(종합건설사 등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 공사를 맡은 수급인(전문건설사 등)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안전 장비 구입 등 비용 지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시에 이를 계상하도록 하며, 또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도급계약까지 확대하여 원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석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 확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건설공사 등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의무를 발주자에서 건설공사도급인까지 확대하고, 건설업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업종의 도급인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수급인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u>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u> 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u>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u> ----- ----- ----- <u>총괄·관리하는 자</u>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도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할</u>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 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와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부과하여 공사 금액 또는 도급금액 중 일정금액을 안전보건관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불법 하도급 성행으로 공사비가 대폭 삭감되어 실제 작업장에서는 처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고용노동부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1,175개 중 하청 사업장 21,249개를 조사한 결과, 19.9%(4,008개)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취지가 사업장에서 실질

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건설도급인인 원청까지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건설공사도급인·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의 도급계약까지 확대하여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사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청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가 불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현행 법률 용어에 맞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표]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u>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u>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u>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u> -----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u>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u>

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공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공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
받은 수급인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
는 아니 된다.

-----총괄
· 관리하는 자-----

③ (현행과 같음)

⑥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도급인
과 제1항의 하도급계
약을 체결한 수급
인,-----

수급인 및 제5항의
도급인으로부터 최

할 때 또는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

③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⑥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도급인 과
하도급계약을 체
결한 수급인,-----

-----수급인 및 도
급인으로부터 최

	<u>초로 사업을 도급</u> <u>받은 수급인</u> ----- ----- ----- ----- ----- ----- -----.	<u>초로 사업을 도급</u> <u>받은 수급인</u> ----- ----- ----- ----- ----- ----- -----.
--	--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찬반토론의 요지

생 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부대의견

없 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10. 기타사항

없 음